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술 품질인증 제도의 유효기간 확대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88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술 품질인증 제도의 유효기간 확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23.
3. 회 부 일 : 2025.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농업·관광·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종임. 이에 정부 역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안 제22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술 품질인증 제도의 유효기간 확대

개정안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확대(3년→4년)하려는 것임
(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u>3년</u> 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품질인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4년</u> 으로-----.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술 품질인증 제도는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심사·인증을 거친 술의 품질 및 위생을 보증하려는 제도로,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¹⁾, “찾아가는 양조장”²⁾ 등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 선정에 우대되고 있음.

[술 품질인증 제도 개요]

구분	세부내용	
인증 표지	“가”형	“나”형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 내산인 경우에 사용
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31조	
목적	○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인증대상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인증내용	○ 제조방법 기준, 제조장 기준(제조시설, 품질관리, 위생관리), 제품 품질 기준(이화학적 기준, 관능평가 기준)에 따라 국가적 인증 부여	
운영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기준 제정, 인증품 사후관리 ○ 한국식품연구원: 인증기관	
사후관리	○ 생산제품의 품질기준 준수, 인증표시·내용,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등 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

- 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사업은 우리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로,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짐.(「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술을 만나보세요!」 (농식품부 보도자료, 2225.8.4.))
- 2)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추진 되었으며,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됨.(「전통주 관광·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 신규 선정」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5.4.18.))

동 제도는 2010년 도입 당시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술 품질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음.

그런데,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술에 대한 재심사를 포기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7%에 달하며, 2025년에는 61.5%에 이르는 등 품질인증 재심사를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임.³⁾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심사 포기 현황]

년도	유효기간 연장 심사 (품목 기준)		
	재심사 대상	재심사 포기*	포기 비율(%)
2017	11	4	36.4%
2018	10	3	30.0%
2019	63	18	28.6%
2020	39	11	28.2%
2021	36	9	25.0%
2022	58	23	39.7%
2023	51	16	31.4%
2024	41	15	36.6%
2025	65	40	61.5%
평균	41.6	15.4	37.0%

*재심사 포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이후, 자진반납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 포함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제출자료

[술 품질인증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증현황 (품목 기준)	135	141	155	167	197	193	173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제출자료

3)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술 품질인증 수수료의 70%(또는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2024년부터 폐지한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확대(3년 → 4년)함으로써 품질인증에 필요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통주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가 3.5명에 불과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영세⁴⁾하여, 잦은 품질인증·심사에 금전적⁵⁾·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⁶⁾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심사주기가 길어지더라도, 술 품질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6조⁷⁾는 품질인증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 받은 술의 조사·열람 수거 등에 대한

4) 전통주 제조업체는 85.8%가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이고,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종사자가 3.5명에 불과할 정도로 업계 전반이 영세한 구조를 보임.

[전통주업 제조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매출액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2억원 미만	2억원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비율	18.2%	13.6%	31.5%	22.5%	14.2%
종사자 수	2인이하	3~4인	5~9인	10~19인	20인 이상
비율	52.6%	25.2%	16.2%	5.6%	0.3%

※ 자료: 「2023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5) 품목당 약 150만원의 인증심사비를 술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함.

* 심사원 출장비(2명 기준), 심의수당(1명 기준), 관능검사비, 제품검사비, 수수료(농식품부 제출자료)

6) 「2021년도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제조업체 심층 인터뷰 참조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인증 업체별 연 2회 이상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정도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사용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

[술 품질인증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구분	소계	표시 변경	표시 사용정지			인증취소
			1개월	2개월	3개월	
2017	2	2				-
2018	0	-	-	-	-	-
2019	2	-	2	-	-	-
2020	0	-	-	-	-	-
2021	4	2	2	-	-	-
2022	1	-	1	-	-	-
2023	4	-	3	-	1	-
2024	6	-	5	-	-	1
2025	5	-	5	-	-	-
합계	24	4	24	0	1	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인증기간 동안의 술 품질 및 위생을 적절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은 술 품질인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증심사를 4년에 한번씩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현재보다 술 품질인증 제도의 신뢰성 검증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강화할 수도 있고, ② 2025년의 경우 품질인증 재심사를 포기하는 비중이 61.5%로 크게 높아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③ 개정안에 따른 4년의 유효기간은 다른 식품 품질인증⁸⁾ 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⁹⁾

문 의 처
02)6788-5417

8) 식품 관련 품질인증제도 유효기간 현황

제도	유효기간	근거
전통식품 품질인증	4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4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GAP)	2년 (필요시 10년 이내 설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인증	2년 (필요시 4년 이내 설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3년	「식품위생법」

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